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8. 16(목) / 총 2매(본문 2매)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	• 과장 황윤언, 사무관 강치득, 주무관 임태진 • ☎ (044) 201-3351,3343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청약 부정 적발 실효 적어” 보도 관련

□ 기존에는 청약 부정당첨자가 수사기관의 브로커 수사 등에서 적발되고 입주 이후에 명단이 통보되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 계약 취소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으나,

○ 지난해부터 정부합동단속 지속 실시,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에 따라 당첨 직후부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착수*되어 입주 이전에 부정당첨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'17.11월 이후 정부합동단속으로 부정당첨 의심사례 대량 적발(832건)

○ 또한 투기과열지구 등의 전매제한기간 연장*에 따라 입주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으며, 투기과열지구 내 부정당첨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**도 강화(8.2 대책)하여, 부정당첨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 및 단속효과도 제고하였습니다.

* ('16.11.22)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 1~3년 → 소유권 이전 등기일

('17.8.2)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(상한제 미적용) 제한없음 → 소유권 이전 등기일(특공 5년)

** (기존) 적발한 날부터 최대 3년간 → (강화) 최대 5년간 자격 제한

□ 향후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부정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,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공급 계약 취소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.

○ 특히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명의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

사업주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며, 법령개정을 통해 부정당첨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 및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.

- ☐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청약 부정당첨을 예방하고 부정당첨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동아, 8.16) >

- ◆ 부정청약 적발 124건, 당첨 취소된 건 1건 뿐
- 계약취소가 의무규정 아닌데다 건설사에 맡겨 흐지부지
 - 부정당첨자는 이미 웃돈 받고 팔아치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
기금과 강치득 사무관(☎ 044-201-33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